

장부 보관의무

1. 소득세법상 장부 비치·기록의무

가. 개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즉,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을 보관한 때에도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할 수 있다. 간편장부란 회계지식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나.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일정한 전문직 사업자 등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한편,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다. 구분 회계처리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1) 내용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①계산서, ②세금계산서, ③신용카드매출전표, ④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즉, 당기 신규개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당기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2) 경비 등 정규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의무 면제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영농,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개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으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3)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한다.

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거주자별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

야 한다. 발급명세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 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

금융회사 등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등은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별 발급명세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상 장부 비치·기록의무

가. 개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되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장부 비치·보존의무가 있다.

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 원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법인은 지출증빙서류 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정규증명서류 수취 대상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소득세법상 사업자,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거래금액 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중 하나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정규증명서류 수취 면제 대상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영농, 임업 또는 어업 등 개인인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것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주택이 아닌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

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그 밖에 부동산임대용역, 개인과의 임가공용역, 운송용역, 재
활용가능자원, 상업서류 송달용역, 부동산 중개용역, 복권판매
수수료,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유료도로 통행 용
역 등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
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장부 비치·기록의무

가. 개요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공
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
등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장부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
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발급하거나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분기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제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